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 의거하여, 이 사유는 항소 결정 번호 에 따른 **고용주의항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에 제출되었습니다.일,해당 케이스에 대한 증거 청문회가 항소 심판 앞에 진행되었습니다.기록 증거 및 적시에 제출된 모든 요약문 또는 서면 주장이 완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고용안전법은본부가당사자들의실질적권리를보호하는방식으로청문회를실시할것을요구합니다.N.C. Gen. Stat. §§ 96-15(c) 및(f); 04 N.C. Admin. Code 24C .0209. 를참조하십시오.즉,모든당사자는절차상공정성및실질적인정당한절차를받아야만합니다.최소한의절차적공평성은당사자들에게발언이들어질기회를제공하는것을요구합니다.당사자들이발언이들어질권리를누리기위해서,그들은통지를받아야합니다.실질적인법절차는모든당사자들에게공정하고평등한법률적용을요구합니다.원고가직장에서 해고된경우,고용주는원고의해고가원고를실업보험혜택에서실격시키는이유에의한것이었음을증명할부담이있습니다.Guilford Cty. v. Holmes, 102 N.C. App. 103, 401 S.E.2d 135 (1991); Intercraft Indus. Corp. v. Morrison, 305 N.C. 373, 376, 289 S.E.2d 357, 359 (1982); Umstead v. Emp't Sec. Comm'n, 75 N.C.App. 538, 331 S.E.2d 218, cert. denied, 314 N.C. 67, 336 S.E.2d 405 (1985).고용주는원고의고용에서퇴직이유를뒷받침하고고용주의기대에대한통지를보여주는문서들을보유하고있거나있었다고주장합니다.그러나고용주는청문회에대한항소심판과원고에게해당문서들을제출하지않았습니다.

본부는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청문회에서 모든 증언,녹취록,서류, 및 기타 증거를 제시할 의무에 대해 통지하였습니다.*항소 &청문회:레벨 1 – 초기 결정에 대한 항소*라는 제목의 파란색 팜플렛이 일,판결 서류 번호 의 사본과 함께 각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팜플렛의 5 번 및 6 번 패널은 다음 언어를 포함합니다:

청문회를준비하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

청문회통지를주의깊게읽으십시오.청문회통지서와함께제공된모든문서를읽고케이스에대해어떠한말들이적혀있는지알고계십시오.이것은귀하가어떤증인이청문

회에서증언을해야할지결정하는데에도움이됩니다.귀하의사건을뒷받침하는모든서류,기록,및기타증거를수집하십시오.청문회가전화로개최되는경우,귀하는

고위당국결정번호
5 페이지중 2

청문일날짜전에항소심판및각당사자에게귀하의증거사본들을제공해야합니다.직접참석하는청문회의경우,각당사자및항소심판들에게줄충분한사본을준비하십시오.귀하가다른당사자및항소심판에게사본을제공하지않는다면,항소심판은케이스에대한결정을내릴때에귀하의증거를고려하지않을수있습니다.귀하의목격자를선택하고그들이청문회에참석할수있도록준비하십시오.목격증인과직접증언은항상최선의증거입니다.직접증언은그들스스로가언급된것또는행해진것에대해냄새를맡고,느끼고,보았거나,들은증인들을포함합니다.만일혐의된행위에대한녹취록이있는경우,그녹취록은증거로제공되지않은녹취록에대해보았거나들었다고하는증인의증언보다최선의증거가됩니다.어떤당사자가해당케이스와관련있다고귀하가생각하는문서에서명했거나서면으로무언가를제출했다는혐의가있는경우,귀하는해당증거를제출할수있지만,귀하는항소심판및다른당사자에게해당문서의사본을제공해야만합니다.전화청문회의경우항소심판에게연락하거나귀하의청문회통지와함께제공된전화청문회질문지를작성하여귀하의증인들의이름및전화번호를제공하십시오. 04 N.C. Admin. Code 24C .0209를참조하십시오 .

.일에청문회공지별지번호가모든당사자들에게우편발송되었습니다.다른것들과함께,통지는다음과같이명시하였습니다:

증거를제출하는방법:맹세한증언이요구됩니다.귀하가증인들이증언하길원한다면,그들은청문회에서그렇게해야합니다.귀하가청문회담당자가고려하기를원하는문서,전자녹취록,또는기타증거가있는경우,귀하는이를담당자및각당사자에게우편발송또는전달해야합니다.증거는청문회이전에수령되어야합니다.

[법률보조:이문서가파일의전시중하나인경우에만추가하십시오.대부분의파일에있지만,전부는아닙니다.
통지서와동반된것들은청문회전시에사용하려는문서들이었습니다.그중에는전시번호의"귀하의항소청문회를위한중요정보"라는제목의문서가있었습니다.다른것들과함께,이문서는다음과같이명시했습니다:

귀하가이전클레임절차에이소포에포함되지않은문서를제출한경우, 그것들이귀하의항소에서고려되기를원한다면 귀하는청문회통지에지시된바에따라 다시제출해야만합니다 .**]**

청문회통지서는또한당사자들에게청문회연기를요청할수있음을알리고,그렇게하기위한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습니다.정당한원인을제시한다면,청문회에앞서고용주는증거를확보및/또는제출할시간을추가로요청할수있습니다.정당한사유는실사를실시할때에법으로요구되는행위를하지않은것에대한합법적변명이되는법적으로충분한이유가되어야합니다.04 N.C. Admin. Code 24A .0105(26) 를 참조하십시오 . "실사"란특정상황에서합리적이고신중한사람이행하도록기대되고행해지는조심성,예방,주의,그리고올바른판단의척도를의미합니다. 04 N.C. Admin. Code 24A .0105(21).

앞서언급된서면통지에따르면고용주는모든증언및기타증거제시를위해증거청문회에참석할의무에대해알려졌음이분명합니다.이기록에는 04 N.C. Admin. Code

24C .0201 에정의되었듯고용주가청문회에참석하지못하게끔되었음을나타내는것이없습니다.또한,기록에는 04 N.C. Admin. Code 24C .0207 에의거하여고용주가증언

또는전자및문서증거를제출하거나청문회의재조정을요청하지못하게끔되었음을나타내는것역시없습니다.기록상에중요한사안에관한결론을뒷받침하는증거가있는경우,위원회는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을자격이없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증거를제시할기회를고용주에게한번이상부여할수없습니다.그렇게한다면원고의적법절차권리를침해하고고용주는피고용자가실업급여혜택에자격이없음을입증해야하는부담을반복해서감당하도록하는것입니다. Dunlap v. Clarke Checks, Inc., 92 N.C. App. 581, 375 S.E.2d 171 (1989).따라서,위원회는고용주가절차적정당한절차를부여받았다고결론내립니다.위원회는단순히고용주가증언이나기타증거를제시할수있는그권리를지키지않았거나 04 N.C. Admin. Code 24A .0105(26)에정의된청문회를재조정하기위한정당한사유를보여주지않았기때문에이문제를재개하지는않기로결정합니다.정당한사유는실사를실시할때에법으로요구되는행위를하지않은것에대한합법적변명이되는법적으로충분한이유가되어야합니다.Douglas v. J.C. Penney Co, 67 N.C. App. 344, 313 S.E.2d 176 (1984)또한참조하십시오 . Patrick v. Cone Mills Corp., 64 N.C. App. 722, 308 S.E.2d 476 (1983). 이경우,위원회는제시된증거만을고려하는것으로제한됩니다.Patrick v. Cone Mills Corp., 64 N.C. App. 722, 308 S.E.2d 476 (1983)를참조하십시오 .

고용주는,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지못하도록증명하기위한증거로문서에대한증언을제공한당사자로서,증거의적합성을보이는일견을보여야한다는부담을져야합니다.고용주의증인(들)은고용주가보유한,또는고용주가합리적으로얻을수있는문서의내용을설명하였습니다.증거의부담을해결하기위해고용주가의존한증인(들)의문서내용에대한증언은문서의내용,또는그기대,
정책,과정,징계,또는징계의위협에대한원고에게의통지를나타낼수있는“최선의증거”가아니었으며,적합한증거가아닌한사실의발견을뒷받침하는데사용될수없었습니다. N.C. Gen. Stat. § 96-15(i).

“최선의증거규칙”이라고도불리는 N.C. Gen. Stat. § 8C-1, Rules 1001. N.C. Gen. Stat. § 8C-1, Rules 1002 and 1003 은내용을증명하기위해서면,녹음또는사진원본또는복제본제작을요구합니다.즉,최선의증거규칙은증거를제공하는당사자가문서를합리적으로사용또는얻을수있거나있었던경우,문서내용을증명하기위해제공되는 2 차적증거를제외하도록요구합니다. 원고가문서의통지에대해고용주의증인(들)이증언한것과같았다고증언한경우고용주는문서를제작할필요가없었을것입니다. N.C. Gen. Stat. § 8C-1, Rule 1007을참조하십시오 . 하지만이경우에서,원고는참조된문서대로통지를받았다는사실을거부하였고고용주가그에대한반증을할수없었습니다.이경우,문서의내용에대한최선의증거는증인(들)이(그가) (그녀가) (그들이)문서에서읽었다는증언이아닌해당문서들자체입니다.

이경우에서,위원회는고용주가절차적정당한절차를부여받았다고결론내리며,단순히고용주가증거를제시할수있는그의권리를지키지않았다고해서이문제를재개하지는않기로결론내립니다.Douglas v. J.C. Penney Co., 67 N.C. App. 344, 313 S.E.2d 176 (1984) 를참조하십시오 .요구사항에대하여통지를받았음에도,고용주는원고의고용에서의퇴직으로이어진상황에대해통지된최선의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습니다.위원회는 또한 항소 심판이 발견된 사실에 고용 안전법 (N.C. Gen. Stat. § 96-1 이하 참조)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결과적 결정은 법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따라서,고용주는 원고가 위법 행위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것과 N.C. Gen.

Stat. § 96-14.6 의의미내에서혜택이거절되어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담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5 페이지중 4

항소 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부터 실업 보험 혜택에 대하여 **실격입니다**
실격이 아니며 부터 실업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평가 위원회 위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_____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해당팜플렛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 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청원서에서,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